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장애인복지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학대보도에 권고기준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19303호, 2023. 5. 2. 공포, 2023. 1. 3. 시행)됨에 따라,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1. 의결주문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학대보도에 권고기준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19303호, 2023. 5. 2. 공포, 2023. 1. 3. 시행)됨에 따라,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6조의13(장애인학대 보도 권고</u> <u>기준 수립 등을 위한 중앙행정</u> <u>기관 등) 법 제59조의18제1항에</u> <u>따른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</u> <u>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</u> <u>보 방안 마련을 위하여 협의하</u> <u>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</u> <u>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「<u>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</u> <u>운영에 관한 법률</u>」 제3조에 <u>따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</u> 2. 「<u>국가인권위원회법</u>」 제3조 <u>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위원</u> <u>장</u> 3. 「<u>정부조직법</u>」 제26조에 따 <u>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</u> <u>육관광부장관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301